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9호 2013. 4. 1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36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37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032호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23
- 사천시 고시 제2013-41호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25
- 사천시 고시 제2013-50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 3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3-233호 향촌삼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 36
- 사천시 공고 제2013-277호 공시송달공고 ----- 4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3만원” 을 “5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20만원” 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

사천시 조례 제10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 을 “사천시의 체육시설”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설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을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등)” 으로 각각 한다.

제9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4)

구 분	3월 ~ 10월	11월 ~ 2월
조 기	05:00 ~ 09:00	05: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8:00
야 간	18:00 ~ 23:00	18:00 ~ 23:00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4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 또는 감액한다. 다만, 감면 또는 감액은 일반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단,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6)

[별지 제4호서식]

관 랑 증

사 진	번호 관 랑 증
<p>주 소 :</p> <p>성 명 :</p> <p>생년월일 :</p> <p>「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사천시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야구장 등) 무료관람권을 허가합니다.</p> <p>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p> <p> 년 월 일</p> <p>사 천 시 장 인</p>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7)

[별 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8,000	10,0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30,000	40,000	
		체육이외	1회(일)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4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4,000	5,000	
		체육이외	1회(일)	7,500	12,5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15,000	20,000	
		체육이외	1회(일)	3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6,000	7,500	
		체육이외	1회(일)	15,000	20,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2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20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사천·삼천포 보조 축구장, 남일대축구장, 곤명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 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1회 2시간 / 1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1면당	10,000	15,000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8)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동시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3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4,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4,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 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9)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 용 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3,500	3,0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000	2,500	
	어린이, 경로대상	2,500	2,000	
선수훈련	일반인	1,500		
	군인, 학생	1,000		
	어린이, 경로대상	5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25,000	17,500	1,800	
에어로빅장	20,000	14,000	-	
탁 구 장	20,000	14,000	1,500	
헬 스 장	30,000	21,000	2,000	
골 프 장	100,000	-	4,000	

- 이용시간 : 1명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 월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0)

7. 중계 방송료 <신설 2007.2.12>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신설 2007.2.12>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1등급	8,000원	
2등급	6,000원		
에드벨론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1)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 (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전액	
사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사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연 1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및 배우자	50%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및 자녀	50%	<신설>
경로대상자(65세 이상인 자)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자(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다자녀가구(셋째 이상) 자녀	50%	<신 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2)

사천시 조례 제10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사천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3)

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방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시설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4)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5)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6)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7)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	------	--	-----	--

소 속		직 급	
-----	--	-----	--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①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8)

[별지 제2호서식]

<앞>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뒤>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Tel : 055-831-33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19)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831-3310)

210mm×297mm

(바탕색 : 빨강, 글자색 : 흰색, 노랑색)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0)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55-831-3310)

210mm×297mm

(바탕색 : 노랑, 글자색 : 빨간색 및 검정색)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1)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사용 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55-831-3310)

210mm×297mm

(바탕색 : 초록, 글자색 : 노랑 및 백색)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2)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55-831-3310)

210mm×297mm

(바탕색 : 분홍, 글자색 : 노랑 및 백색)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3)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 - 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 승인번호 : 제2013-3호
2. 점용·사용 변경 승인 년월일 : 2013년 3월 21일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실안동 1096-18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승인 면적 : 336.5㎡
○ 도크 : 170㎡, 부잔교 : 66.5㎡
5. 점용·사용 목적
○ 어선부착 해조류 제거 작업을 위한 도크와 어선 안전관리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 설치
6.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10년 04월 26일 ~ 2013년 04월 25일
- 변경 : 2013년 04월 26일 ~ 2028년 04월 25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4)

승 인 조 건

1. 동 시설물은 선박에 붙은 해초류 등 제거 작업 및 선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선박 도크 및 부잔교 시설의 기간연장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이용 시,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자재 및 시설물 주변 해역의 쓰레기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계류 및 수리 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위 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7. 동 장소는 용도·지역지구 미지정된 공유수면 및 도시계획시설 『중로3-7호선』이 계획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9.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5)

사천시 고시 제2013 - 41호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고시

향촌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9조, 제23조의 규정과 같은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3년 03월 25일

사 천 시 장

I.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 3. ~ 2012. 12. 31 (46개월)

 변경 2009. 3. ~ 2013. 06. 30 (52개월)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6)

8. 추정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 사업비내용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합 계	553.4	
단 지 조 성 비	365.4	(진입도로40억원포함)
토 지 매 입 비	132.0	
지 장 물 보 상 비	54.0	
기 타 부 대 비	2.0	

나. 자금조달계획

○ 기 정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5,340	5,000	5,000	22,300	9,200	7,500	6,340	
지방비	4,000	-	-	2,300	1,700	-	-	
보조(진입도로)	4,000	-	-	2,300	1,700	-	-	
삼호조선주식회사	51,340	5,000	5,000	20,000	7,500	7,500	6,340	

○ 변 경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5,340	5,000	5,000	22,300	6,700	5,000	5,000	6,340	
지방비	4,000	-	-	2,300	1,700	-	-	-	
보조(진입도로)	4,000	-	-	2,300	1,700	-	-	-	
삼호조선주식회사	51,340	5,000	5,000	20,000	5,000	5,000	5,000	6,340	

9. 편입토지조서 (변경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7)

II. 실시계획(변경)승인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

- 성명 : 기 정 - 삼호조선주식회사 관리인 임문규
변 경 - 채무자 삼호조선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권 영 상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2 대성빌딩 301호
(경남 통영시 도남동 459-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농업유희인력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함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 적기공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농공단지조성면적 : 260,040㎡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원
- 면적 : 260,040㎡(육지부166,485 + 해면부93,555)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
-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9. 3. ~ 2012. 12. 31 (46개월)
변경 2009. 3. ~ 2013. 06. 30 (52개월)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8)

6.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0,040	-	260,04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806		56,806	21.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0,075		190,075	73.1	
	준공업지역	13,159		13,159	5.0	
미지정 지역		-		-	-	

7. 도시관리계획결정(제1종 지구단위계획)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 구역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향촌농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215번지일원	260,040		260,040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0,040		260,04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6,806		56,806	21.9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0,075		190,075	73.1	
	준공업지역	13,159		13,159	5.0	
미지정 지역		-		-	-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29)

다. 기반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15	25	보조간선도로	230	4호광장	향촌동 산15-10	일반 도로	-	2009.3.20	
기정	중로	2	23	17	집산도로	475	대로 3-15호선	사등동 산57	일반 도로	-	2009.3.20	
기정	중로	2	24	17	집산도로	242	중로 2-23호선	향촌동 660-3	일반 도로	-	2009.3.20	
기정	소로	3	146	4	국지도로	190	중로 2-24호선	향촌동 668	일반 도로	-	2009.3.20	

2) 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38,859		38,85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5-3번지	9,475		9,475	2009.3.2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69-1번지	4,424		4,424	2009.3.20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51-1번지	20,076		20,076	2009.3.20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55-1번지	1,605		1,605	2009.3.20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4-4번지	76		76	2009.3.20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30번지	1,474		1,474	2009.3.20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25-4번지	1,729		1,729	2009.3.20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0)

3)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767	-	4,767	-	
기정	6	노외 주차장	향촌동 산54-2일원	4,767	-	4,767	2009.3.20	

4)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951		2,951	-	
기정	3	하수종말 처리장	향촌동 669-1일원	2,951		2,951	2009.3.20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0,040				260,040		260,040		
-	I	183,921	1	사천시 사등동 235번지 일원	183,921		183,921		산업시설용지	
	II	8,392	1	사천시 사등동 산22-9번지 일원	8,392		8,392		지원시설용지	
	III		21,150	1	사천시 사등동 산54-2번지 일원	21,150		21,150	기 반 시 설 용 지	도로
			4,767	2	사천시 사등동 231번지 일원	4,767		4,767		주차장
			2,951	3	사천시 사등동 669-1번지 일원	2,951		2,951		하수종말처리장
			76	4	사천시 향촌동 산14-4번지 일원	76		76		녹지
			9,475	5	사천시 향촌동 산15-3번지 일원	9,475		9,475		녹지
			20,076	6	사천시 사등동 51-1번지 일원	20,076		20,076		녹지
			1,605	7	사천시 향촌동 655-1번지 일원	1,605		1,605		녹지
			4,424	8	사천시 향촌동 669-1번지 일원	4,424		4,424		녹지
	1,474	9	사천시 사등동 230번지 일원	1,474		1,474	녹지			
	1,729	10	사천시 사등동 225-4번지 일원	1,729		1,729	녹지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2)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I-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3조의4 별표1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최고높이	5층이하
		배치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색채	건물의 구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3조의4 별표1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개정 2008.2.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최고높이	5층이하
		배치	건물의 형태 및 배치는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색채	건물의 구조색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권장)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
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9. 관련도서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관련도서는 사천시
청 공단조성과(055 - 831 - 3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사업
 - 명 칭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총면적 67,727㎡(도로 21,150㎡, 녹지 38,859㎡, 주차장 4,767㎡, 하수종말처리장 2,951㎡)
 - 시설규모
 - 도로

구분	결 정 규 모					시 행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기점	종점	연장(m)	
도로	대로	3	15	25	230	4호광장	향촌동 산15-10	230	
	중로	2	23	17	475	대로 3-15호선	사등동 산57	475	
	중로	2	24	17	242	중로 2-23호선	향촌동 660-3	242	
	소로	3	146	4	190	중로 2-24호선	향촌동 668	190	

- 기타 기반시설

구분	결 정 규 모			시 행 규 모		비고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5-3번지	9,475	향촌동 산15-3번지	9,475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69-1번지	4,424	향촌동 669-1번지	4,424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51-1번지	20,076	사등동 51-1번지	20,076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655-1번지	1,605	향촌동 655-1번지	1,605	
녹지	완충녹지	향촌동 산14-4번지	76	향촌동 산14-4번지	76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30번지	1,474	사등동 230번지	1,474	
녹지	완충녹지	사등동 225-4번지	1,729	사등동 225-4번지	1,729	
노외 주차장		향촌동 산54-2일원	4,767	향촌동 산54-2일원	4,767	
하수종말처리장		향촌동 669-1일원	2,951	향촌동 669-1일원	2,951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4)

4.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

-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459-6번지
- 성 명 : 기정 - 삼호조선주식회사 관리인 임 문 규
 변경 - 채무자 삼호주선주식회사 파산관재인 권 영 상

5. 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변경)

- 당초 : 2009. 03. ~ 2012. 12. 31
- 변경 : 2009. 03. ~ 2013. 06. 30

6.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사 업 명	합계	국. 도비	시비	자기자본	비고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553.4		40	513.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관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5)

사천시 고시 제 2013-50호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5일

사 천 시 장

1. 고 시 일 : 2013. 4. 5
2. 장 소 : 사천시 홈페이지, 시 공보,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변경(세부내역 별도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 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831-2320~2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6)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3-233호

향촌삼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향촌삼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제 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사 천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
 -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사업의 명칭 : 향촌삼재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사천시 향촌동 1321번지 일원
 - 면 적 : 91,579.9㎡
4. 준공인가년월일 : 2013. 3. 29.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7)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 고
계	91,579.9	100.0	
○ 산업시설 부지	64,152.0	70.1	
○ 공공시설 부지	24,290.1	26.4	
- 도 로	13,755.2	15.0	
- 공 원	1,506.3	1.6	
- 완 충 녹 지	5,894.1	6.4	
- 경 관 녹 지	3,134.5	3.4	
○ 지원시설 부지	3,137.8	3.5	
- 관 리 동	745.0	0.8	
- 주 차 장	611.0	0.7	
- 폐수처리시설	1,781.8	2.0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 고	
합 계	91,579.9	100.0			
산업시설용지	64,152.0	70.1	실수요자 분양		
공공시설용지	소 계	24,290.1	26.4		
	도 로	13,755.2	15.0	사천시 귀속	
	공 원	1,506.3	1.6	사천시 귀속	
	완 충 녹 지	5,894.1	6.4	사천시 귀속	
	경 관 녹 지	3,134.5	3.4	사천시 귀속	
지원시설용지	소 계	3,137.8	3.5		
	관 리 동	745.0	0.8	사천시 귀속	
	주 차 장	611.0	0.7	사천시 귀속	
	폐수처리시설	1,781.8	2.0	사천시 귀속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38)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조성 전)

구 분	합 계		국토해양부		기 타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합 계	4	669	4	669	-	-
도 로	4	669	4	669	-	-

○ 지방자치단체(사천시) 무상귀속분 총괄(조성 후)

구 분	면 적(m ²)	귀속 및 관리기관	비 고
합 계	27,427.8		
도 로	13,755.2	사천시	
공 원	1,506.3	사천시	
지원시설	744.9	사천시	
주 차 장	611.0	사천시	
폐수처리장	1,781.8	사천시	
녹 지	9,028.6	사천시	

○ 지방자치단체(사천시) 무상귀속분 세부조서 : 별첨

○ 도면 : 별첨

6.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공단조성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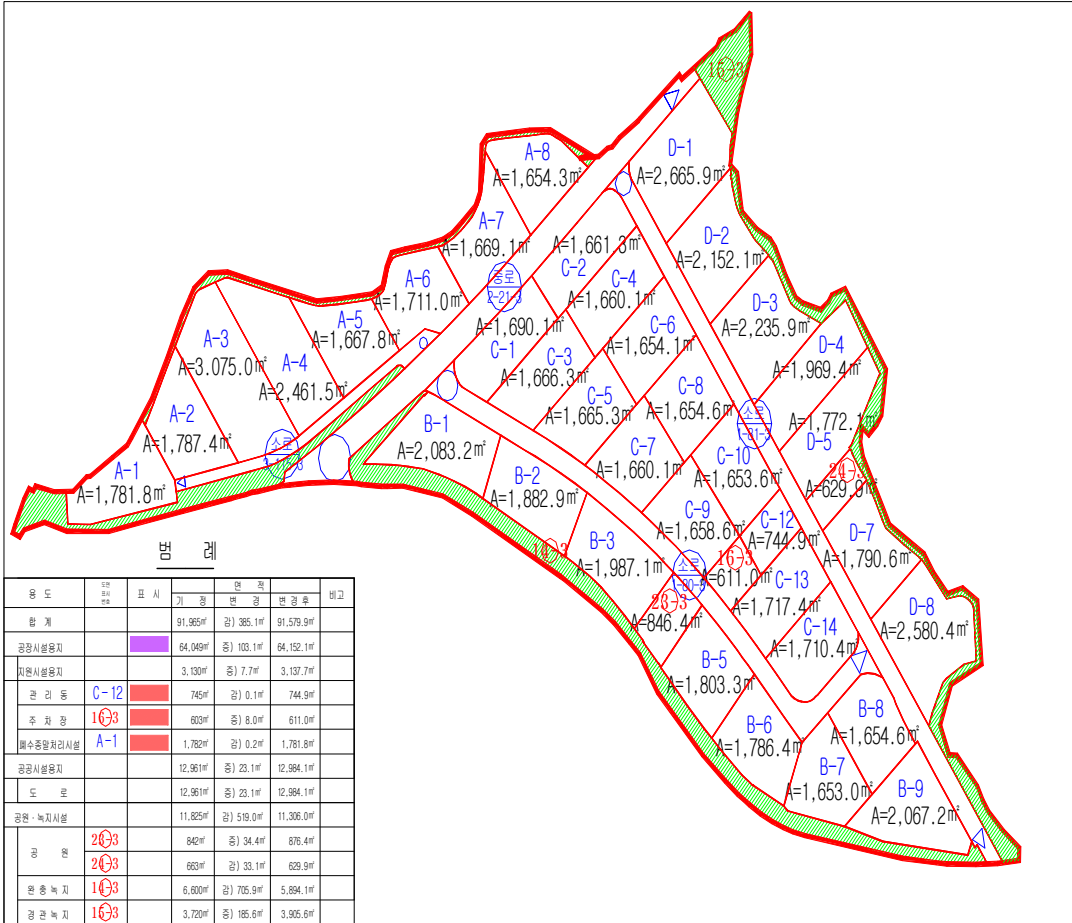
제299호(39)

지방자치단체(사천시) 무상귀속분 세부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비 고
합 계	16필지		27,427.8	
사천시 향촌동	1296	잡	1,781.8	폐수처리장
	1307	공	876.4	공원
	1318	차	611.0	주차장
	1321	대	744.9	지원시설
	1332	공	629.9	공원
	1335	공	1,872.5	녹지
	1336	공	842.1	녹지
	1337	공	25.2	녹지
	1338	공	4,021.6	녹지
	1339	공	1,274.5	녹지
	1340	공	992.7	녹지
	1341	도	1,032.7	도로
	1342	도	4,415.1	도로
	1343	도	3,582.3	도로
	1344	도	3,954.0	도로
	1345	도	771.1	도로

사천 시 공보

제299호(40)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41)

사천시 공고 제2013 - 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기간 : 2013. 04. 15 ~ 2013. 04. 29(15일간)
- 제 목 :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위하여 의견제출 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시송달(공고)명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통보				
2.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삼흥산업(주) [구:근영종합건설(주)] 대표 김성주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1155				
3. 원인된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계약사항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사천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박영태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번호	055-831-2920	
	기 한	2013년 04월 29일				

2013년 04월 11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42)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99호(43)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